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자 확대 〉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종사한 사람 추가)

■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62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검토의견: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자 확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종사한 사람 추가)	2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경위

가. 제안자 : 유용원의원 등 12인

나. 제안일 : 2024. 6. 5.

다. 회부일 : 2024. 6.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중 사망한 경우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이나 원자력 분야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종사하며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온 민간인의 경우에는 폭발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원과 달리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다가 사고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이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과 민간인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안보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것임(안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II. 검토의견: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자 확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종사한 사람” 추가)

□ 개정안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다가 사고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가. ~ 하. (생략) <u><신설></u>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 ----- ----- ----- ----- ----- 1. ----- -----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u>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다가 사고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u>

	<u>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	제9조(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
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제	-----
5조제1항제1호차목부터 <u>과목까</u>	----- <u>과목까</u>
<u>지</u> 의 규정에 따라 안장 대상별	<u>지 및 거목</u> -----
로 규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
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치 등) ① -----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	-----
부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5조제1항제1호차목, <u>타목</u>	1. ----- <u>타목</u> ,
<u>및 과목</u> 에 해당하는 사람의	<u>과목 및 거목</u> -----
안장 대상 해당 여부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안장 신청 등) ① (생	제11조(안장 신청 등)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후	② -----
(死後)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	-----
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	-----
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生前)에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제5조제1항제1호차목·타목·<u>과목</u>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대하여 안장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람 나. (생략) 3. (생략) ③·④ (생략)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 -----<u>과목·거목</u>----- ----- ----- -----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에 따르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 등의 수행 중에 사
 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은 국
 립현충원의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¹⁾²⁾ 국방 또는 원자력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분야 등의 위험한 업종에 종사하다가 폭발사고로 인해 사망한 민간인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음.³⁾

□ 이에 개정안은 국방이나 원자력 분야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업종에 근무하는 민간인이 폭발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이라는 점이 공무원과 유사함에도, 공무원과 달리 국립현충원의 안장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들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를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국가안보 직무 수행 민간인의 현충원 안장 여부는 이들의 현충원 안장 당위성뿐만 아니라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에 관한 현행법의 기본체계 및 입장, 기존 미안장 대상인 국가유

마.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5조를 준용하되,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카.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안장 대상자의 요건)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은 제외한다)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수행하는 직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의 수행을 말한다.

1.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에서의 교정업무
2. 재해의 예방·대응·복구 현장에서 인명구조, 진화, 구난, 방역 등의 직무
3. 헬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병해충 방제, 인명구조 등의 직무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자만 해당한다)
5. 간첩체포 및 대 테러활동 등 국가안전보장 직무(국가정보원 직원만 해당한다)
6.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

3) 다만, 국방부 소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현재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는 있음.

*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임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공자와의 형평성 및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법은 현충원의 안장 대상으로 국가 수호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등을 주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이 추가하려는 대상이 기존의 안장 대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수행공로자, 상이등급 4급 이하 위험직무 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부상 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이면서도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닌 사람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국가안보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민간인의 경우 공무원과의 업무책임 범위가 상이하고,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수행공로자 등 안장 비대상 국가보훈대상자 등과의 형평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0

참고1

관련 규정 또는 입법례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가. ~ 자. (생략)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카.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타. (생략)

파.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하. (생략)

2. ~ 4. (생략)

② ~ ⑦ (생략)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안장 대상자의 요건) ① (생략)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은 제외한다)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수행하는 직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의 수행을 말한다. <개정 2013. 11. 20.>

1.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에서의 교정업무

2. 재해의 예방·대응·복구 현장에서 인명구조, 진화, 구난, 방역 등의 직무

3. 헬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병해충 방제, 인명구조 등의 직무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자만 해당한다)

5. 간첩체포 및 대 테러활동 등 국가안전보장 직무(국가정보원 직원만 해당한다)

6.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

③ ~ ⑤ (생략)

□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임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대하여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참고2

국방과학연구소 현황

□ 전체 임직원 인원 현황

(2024. 6. 17. 기준)

구분	계	임원	직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인원	3,627	2	3,625

□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구분 기준

- 국방과학연구소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 '제수당 및 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방침'에서 '위험수당 대상직무 및 등급표'를 규정

※ 폭발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위험수당 대상자 직원) : 1,571명(43%)

□ 국방과학연구소 사망자 현황

(2024. 6월말 현재)

사망자 인적사항				사망사유	국립묘지 안장여부
직 급	직위	성 명	사망일시		
선임연구원	—	방○○	'81.11.20	업무수행중 사망	미안장
연구원	—	김○○	'85. 8.12	업무수행중 사망	미안장
선임관리원	—	홍○○	'87. 4.15	업무수행중 사망	미안장
책임관리원	실장	차○○	'90. 1.25	과로로 사망	미안장
책임관리원	부장	이○○	'90. 4.19	과로로 사망	미안장
선임기술원	실장	김○○	'90. 5.27	과로로 사망	미안장
책임연구원	본부장	김○○	'09. 8.23	심장마비로 사망	안장 (육군대령 예편)
고용원	—	정○○	'09.12. 3	시험 중 폭발사고	미안장
책임연구원	팀장	박○○	'13.12.15	휴일근무중 교통사고	미안장
선임연구원	—	기○○	'19.11.13	시험 중 폭발사고	안장
책임기술기사	—	김○○	'23.12.21	폭발사고 (사고 원인 조사중)	안장

참고3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연혁

시행일	자 격	신 분
'56. 4.13	전사자	군인, 군무원
'57. 1. 7	순국선열, 국가공로자 (국방부장관 제청으로 국무회의 의결)	
'65. 3.30 (국립묘지령 제정)	전사자	경찰
	무공이 현저한 자 *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지정	군인
	국장으로 장의된 자	국장
	국가.사회공헌자 *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지정	국가.사회공헌자
'70.12.14	2급 이상 상이원인 사망자	상이군경
	전사자	향토예비군
	외국인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	외국인
'81. 1. 1	무공수훈자(태극 ~ 을지)	군인
	장관급 장교	군인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중에 적 또는 범인의 공격으로 사망한 경찰관	경찰
'82. 1. 1	순직자	경찰
	애국지사	애국지사
	국민장으로 장의된 자	국민장
'88. 1. 1	5급 이상 상이원인 사망자	상이군경
'94. 9. 1	순직소방공무원 * 국가사회공헌자로 안장 (국방부장관 제청→국무회의 심의)	소방공무원 *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조업무 수행자
'95. 1. 1	5급 이상 상이자	상이군경
'97. 1. 1	모든 상이자	상이군경
	모든 무공수훈자(태극 ~ 인헌)	군인
'98. 1. 1	모든 무공수훈자(태극 ~ 인헌)	경찰

시행일	자 격	신 분
'06. 1. 30. (국립묘지법 시행)	순직향토예비군	향토예비군
	순직·공상공무원 * 안장심의위원회 심의	공무원(위험직종*, 1급~3급) *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의사상자 * '70.8.4 부터 소급 적용 규정 ** 안장심의위원회 심의	의사자 의상자(1급 ~ 3급)
	재일학도의용군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별도안장대상자로 규정
	참전유공자,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편입	
	화재 구조 및 구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 당연안장으로 변경	소방공무원
'08. 3. 28.	화재 구조 및 구급 중 순직자 및 상이자(1~3급) * '94.9.1 부터 소급 적용	소방공무원(현충원 당연안장)
'11. 6. 30.	순직 및 공상군경 등록자	소방공무원(호국원 안장대상) * 국가유공자법 개정 반영(소방공무원도 공상·순직군경에 포함)
'13. 7. 16.	화재 구조 및 구급 관련 상이등급을 받은 자 (등급구분 폐지)	소방공무원(현충원 안장대상)
	독도의용수비대	
'14. 1. 17.	국적상실자	국적상실자는 안장심의를 통해 안장 여부 결정
'14. 5. 21.	소방지원활동중에 순직 또는 상이를 입은 자	소방공무원(현충원 안장대상)
'15. 3. 27.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 안장규정 적용 시 국가공무원 의제 *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의제 (현충원)
'16. 12. 20.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 또는 상이를 입은 자	소방공무원(현충원 안장대상)
'25. 2. 28.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	경찰·소방공무원(호국원 안장대상)